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평가기준, 평가방법 및 절차 등 (제12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에 ‘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’를 도입하였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이 2018년 2월 21일에 개정됨
-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평가기준, 평가방법 및 절차, 영향평가 기술지원의 근거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으로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과 사업의 필요성·공공성 등을 제시 (안 제12조의2 제1항 신설)
-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재검토 의무화 (안 제12조의2 제2항 신설)
- 국가기관등은 예산편성 단계, 발주 단계 그리고 그 외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하는 평가절차·방법 명시 (안 제12조의2 제3항부터 제5항 신설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영향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(안 제12조의2 제6항 신설)

다. 입법효과

-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해하는 가능성을 최소화 함
- 공공발주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

라. 그 밖의 참고사항

< 연관 영향평가제도 비교 > ('14.12, SPRI)

제도	기술영향평가	개인정보영향평가	환경영향평가
근거 법령	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	개인 정보 보호 법 33조 및 동법 시행령 35~38조	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
평가 대상	대상기술선정위원회와 과기정통부에서 선정한 영향과 파급효과가 큰 기술	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정보를 취급 혹은 연동 하는 공공기관	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개발 사업
평가 기준	- 국민생활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- 경제·사회·문화·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-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	- 대상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-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-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- 특정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	- 자연생태환경분야 - 대기환경 분야 - 수환경분야 - 토지환경분야 - 생활환경 분야 - 사회환경, 경제환경 분야
평가 결과	- 경제·사회·문화·윤리. 환경으로 영역별 영향 분석 - 정책제언	- 평가 기준(항목)별 이행수준 확인과 의견 - 침해요인 도출 - 위험도 산정공식에 의한 위험도 산정 - 개선방안 도출 - 개선 계획	- 현황 - 영향 예측 - 저감방향
비고	산업과 비산업분야의 평가	기술별 구체적인 지침 수행 여부 평가	민간 참여 협의제도 운영중